

교 습 과 정	일시수용 능력인원	비	고
34.도예, 공예	30	실습실 45㎡ 기준	
35.음악(피아노)	20(15)	실습실 45㎡ 기준	
36.미 술	30	실습실 45㎡ 기준	
37.사 진	30	실습실 45㎡ 기준	
38.모델, 영화, 연극	20	실습실 45㎡ 기준	
39.바 둑	20	실습실 45㎡ 기준	
40.꽃꽂이, 꽃기에	30	실습실 45㎡ 기준	
41.화공계열	40	실습실 45㎡ 기준	
42.산업안전계열	40	실습실 45㎡ 기준	
비고 : 상기에 열거되지 아니한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인원에 대하여는 유사한 교습과정을 준용한다.			

<p>.....</p> <p>서울특별시2002년월드컵축구대회주경기장 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p> <p>서울특별시2002년월드컵축구대회주경기장건설 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5호중 “분양 및 임대수입”을 “대부 및 운영수입금”으로 한다. 안 제6조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제5호중 “주경 기장 건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 하여 동호를 제4호로 한다.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세입) 기간시설확충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국고보조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기타 수입</p> <p>서울특별시2002년월드컵축구대회주경기장 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02년월드컵축구대회 주경기장(이하 “주경기장”이라 한다) 건설 및 관련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재 정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주경기장건설사업특별회계 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p> <p>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주경기장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주경기장건설사업특 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p> <p>제3조(계정의 구분) 이 회계는 건설사업계정· 기간시설확충사업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로 운영한다.</p> <p>제4조(관리·운영) ①회계는 서울특별시장이 관리·운영하며, 그 사무는 계정별로 각각 그 사업을 주관하는 담당 국장 또는 단장 이 처리한다. ②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이 회 계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 반회계에 준하여 처리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건설사업계정</p> <p>제5조(세입) 건설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p>
--	---

호로 한다.

- 1. 국고보조금
- 2.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대한축구협회 등 관련기관의 분담금
- 3. 일반회계 전입금
- 4. 지방채 및 다른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 5. 주경기장 부대시설의 대부 및 운영수입금
- 6. 기타 수입금

제6조(세출) 건설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로 한다.

- 1. 주경기장 및 그 부대시설의 건설비
- 2. 제1호에 수반되는 유지관리비와 기타 부대 경비
- 3. 예탁금, 차입금 및 지방채 자금의 원리금 상환
- 4.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3장 기간시설확충사업계정

제7조(세입) 기간시설확충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로 한다.

- 1. 국고보조금
- 2. 일반회계 전입금
- 3. 기타 수입금

제8조(세출) 기간시설확충사업계정의 세출은 기간시설 확충사업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2호라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동호마목을 삭제한다.

(4)정비공장(자동차종합정비공장을 제외한다.)

제23조제11호바목중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정비공장으로서 배출시설 기준의 2배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자동차종합정비공장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53조제2항중 "30퍼센트이상"을 "10퍼센트이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 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종전조례 제21조제1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된 자동차정비공장은 이 조례 제21조제12호라목(4)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서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8. 10
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8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1998년 10월 2일

다. 상정일자

○제109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1998. 10. 16)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교통관리실장 차동득)

가. 제안이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행정(1)부시장"에서 "위원 중 호선"으로 변경하고, 분과위원회를 소위원회로 변경하여 내실있는 심의를 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골자

○위원장이 행정제1부시장에서 위원 중 호선

○분과위원회 명칭은 소위원회로 개칭하고자 하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김태호)

○본 조례의 제정 배경

'97. 7월에 발표한 "시내버스개혁종합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전문성, 효율성 및 시민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버스정책시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며

주요기능은

- 시내버스정책방향 설정